

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4일 (오염도검사기간 제외)	
신청인	상호(명칭)			사업자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 기재)	
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			
사업장소재지		(전화번호:)			
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		[] 허가 또는 [] 신고 제 호			
가축분뇨배출시설(처리시설) 결함 및 고장발생(예정)일		년 월 일			
가축분뇨배출시설(처리시설) 변경 및 개선완료 예정일		년 월 일			
결함 및 고장	시설명	규모(용량)	수량	[] 결함 [] 고장내용	
내용					
개선계획					
오염물질배출 예상농도		개선기간 중 오염물질 예상배출량		(m ³ /일)	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(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·변경·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) 2.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.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.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.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-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현지확인	→	결재	→	통지
신청인		시·군·구 민원실		시·군·구 가축분뇨 담당부서		(필요시)		시·군·구 가축분뇨 담당부서		